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중소기업간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련 일부 법안 개정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건의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3 년 2 월 15 일

청 원 인

성 명 : 이 중 원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소 개 의 원 : 대표발의자: 이중원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이종원
건명	중소기업간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련 일부 법안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13년 2월 15일

소개의견

청원인 이종원은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청소년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가 개최한 2013년 2월 정기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 중 하나가 『중소기업간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련 일부 법안 개정 청원』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지 않고 적극적인 개척정신을 함양함으로써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제정 청원하여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활발한 국제교류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 의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8조와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구문대조표

현행	개정
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①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사이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국외 중소기업과 국내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책을 상시 마련해야 하며 예산을 할당할 수 있다.
제14조(국제화의 촉진)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제화의 촉진 방안)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강한 국제적 중소기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강소기업 국제교류 박람회’를 국가공식행사로 법제화하여 수많은 국내외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타국의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성의를 다하여야 한다. 타 국가의 우수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들과 국내 중소기업 사이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위하여 연 1회 대규모 국가행사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타국가의 우수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들과 국내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 MOU까지 체결하는 등의 진일보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2 박람회에서 지속협력MOU를 체결할 수 있

다.

3. 박람회에서 신시장정보교류를 할 수 있다.

4. 박람회에서 공동기술개발 이후 국제특허공유(크로스라이선스)를 합의함으로써 세계시장을 함께 선도해 나갈 수 있다.

5. 기업간 양자협력과 다자협력 등 다방면의 형태로 공식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6. 국외 기업 중 성공사례를 소개 및 교육해줄 수 있는 기업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가 초청하여 박람회에서 중소기업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7. 위의 모든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② 박람회 준비와 주요일정 및 국내외 참가기업의 범위에 관련하여 정부와 중소기업들의 원만한 공식적협약이 가능하다.

1. 현재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서 우수성을 입증받은 중소기업은 위 박람회의 참가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③ 정부는 강소기업 국제교류박람회의 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소 개 의 원 이 종 원 인

청원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관련 법안 제정 청원

1.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고 우리나라 일자리의 90%가 중소기업에서 창출된다는 점은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제고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대기업의 횡포, 대기업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중소기업 등 다방면의 요인들은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에만 머무르거나, 대기업의 하청업체라는 존재에서 탈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국제시장을 개척하고 자신들의 경쟁력을 한 층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법안의 궁극적 목적은 국외 중소대기업들과 국내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교류를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활발한 국제교류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주요 일부 법안 개정을 청원합니다.

2. 주요골자

중소기업기본법 제8조와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개정
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①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사이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국외 중소기업과 국내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책을 상시 마련해야 하며 예산을 할당할 수 있다.
제14조(국제화의 촉진)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제화의 촉진 방안)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강한 국제적 중소기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강소기업 국제교류 박람회’를 국가공식행사로 법제화하여 수많은 국내외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타 국가의 우수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들과 국내 중소기업 사이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위하여 연 1회 대규모 국가행사로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3.박람회에서 신시장정보교류를 할 수 있다. 4.박람회에서 공동기술개발 이후 국제특허공유

(크로스라이센스)를 합의함으로써 세계시장을 함께 선도해 나갈 수 있다.

5. 기업간 양자협력과 다자협력 등 다방면의 형태로 공식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6. 국외 기업 중 성공사례를 소개 및 교육해줄 수 있는 기업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가 초청하여 박람회에서 중소기업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7. 위의 모든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② 박람회 준비와 주요일정 및 국내외 참가기업의 범위에 관련하여 정부와 중소기업들의 원만한 공식적협약이 가능하다.

③ 정부는 중소기업 국제교류박람회의 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안은 공포한 날 이후부터 시행한다.

청원인 성명 : 이종원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